

한-페루 FTA 원산지 절차 요약

구분		한-페루 FTA		
발효일자		2011. 8. 1.		
협정국		페루		
원산지 증명서	기간	발효 이후 5년간 (부속서 4가)	발효 6년부터 (제 4.1 조 ~ 제 4.6 조)	
	발급주체	- 기관발급(원산지증명서) - 자율발급(원산지신고서)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 불 이하 수출자	- 자율발급	
	서식	통일서식	통일서식	
	유효기간	발급일로부터 12월	발급일로부터 12월	
	제출면제기준	미화 1,000불 이하	미화 1,000불 이하	
	참고사항	-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;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(단,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세관에 한정)		
	원산지결정기준 (부호)	WO : 완전생산물품 WP : 원산지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생산 PSR :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, 역내가치포함, 공정 또는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 OP :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		
부가가치 계산 방법	계산방법	직접법(BU), 공제법(BD)		
	부가가치기준	BU 35%, BD 40 ~ 55%		
	기준가격	FOB		
역외 가공	품목	100개 (HS 6단위)		
	지역	개성공단		
	가공비	역외 부가가치 40% 이하		
제3국발행시송장		원산지증명서 5번 란(비고)에 비당사국 소재 운영인의 법적 이름 명기		
원산지 검증	검증	검증방법	직접 / 간접	
		검증주체	수입국 세관(직접) / 수출국 세관(간접)	
	회신	회신기간	90일(직접) / 150일(간접)	
		회신주체	수입자, 수출자 또는 생산자(직접) / 수출국 세관(간접)	
	미회신 조치	협정관세 적용 제한		
	근거조항	의정서 제27조		

[한-페루 FTA] <한-페루 FTA 기간별 원산지 증명서식>

구분	발효 이후 5년간	발효 6년부터
기관발급	수출자-원산지증명서 (협정 부록 4가-1)	-
자율발급	수출자-원산지신고서 (협정 부록 4가-2)	수출자-원산지증명서 (부속서 4나)
근거규정	부속서 4가	협정문 제 4.1 조

※ 지리적 표시(GI : Geographical Indication)

■ 상품의 특정 품질,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, 특정 지역, 지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표시(WTO TRIPS 협정 제22조)

■ 양측 주요 지리적 표시 : (우리) 고려홍삼, 이천쌀, (페루) 페루 피스코, 쿠스코 옥수수

구분	한·칠레	한·페루	한·EU
우리	3	82	64
상대국	3	4	162